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902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8111	송재봉의원	2025.2.1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5.9.9.) 상정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210540	박형수의원	2025.5.1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6.3.10.) 상정, 축조 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

조).

나.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라.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 또는 축전지를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이하 “전기자동차등배터리”라 한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탑재되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이하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라 한다)
2. “사용후 배터리”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3. “유통사업자”란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재제조사업자”란 사용이 종료된 전기자동차등배터리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로 제작·조립(이하 “재제조”라 한다)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1)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재사용사업자”란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로 제작·조립(이하 “재사용”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재활용사업자”란 배터리(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를 재생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배터리로부터 재생원료를 추출(이하 “재활용”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

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재생원료”란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 또는 그 화합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제5조(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5. 관련 법령, 고시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조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또는 지속가능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통사업자 등

제6조(유통사업자의 등록) ① 유통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통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만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연구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통사업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 【전기자동차등배터리(제2조제1호가목1)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를 말한다】 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유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유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유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조(유통사업자 등록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 ① 재사용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 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 본다.

제12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 “제6조제1항”은 “제10조제1항”으로 본다.

제13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재사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을 구매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또는 보험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제14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후 배터리 중 전기자동차등배터리(제2조제1호가목1)에 한정한다)에 대한 제1항의 성능평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후 배터리 중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에 대한 제1항의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성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①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안전검사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

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유통 전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안전검사대상제품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 재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제1항의 유통 전 안전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정기 안전검사) ① 안전검사대상제품을 소유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안전검사대상제품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 재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제1항의 정기 안전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제17조(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① 정부는 사용후 배

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용후 배터리의 우선구매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후 배터리의 공정 거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원료가 배터리에서 추출된 재생원료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인증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함유율 목표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 품목, 함유율 목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함유율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4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송·보관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 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공급망 안정과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운송 및 보관 실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보관 시설 및 운송 인프라 구축

2. 안정적인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인증·실증

3.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터리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배터리 관련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및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 및 제24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 및 배터리 핵심광물 등 분야의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배터리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터리 연구·기술개발 관련 기관
- 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용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2호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2. 제12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재사용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

정지

3.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알선한 자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자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 검사대상제품(「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 재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를 분리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제품(「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 재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제외한다)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재제조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제2항(재제조사업자에 한정한다)은 2027년 7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